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
----------	----

발의연월일: 2018. 09 . 14.

발 의 자: 고광민 의원(1명)

찬 성 자: 장옥준, 전경희, 김정우, 김안숙
안종숙, 김익태, 허은, 박미효,
박지남, 최원준, 김성주, 이현숙
(12명)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위원회 심의기능을 원활히 하며,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가.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연구단체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 나.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활동비 사용에 따른 제한 및 연구활동비 부정사용에 대한 회수를 규정함(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8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규정발전”을 “의원이 의정발전”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의원연구단체”로,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를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으로 한다.

제2조 중 “연구단체는”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으로, “이상 의원”을 “이상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초구의회의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연구단체의”를 “연구단체의”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를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원연구단체”를 “연구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을 “개의하고,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원연구단체”를 “연구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배분”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 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 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단체가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호”를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로, “등록”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으로 한다.

제9조 중 “의원연구단체”를 “연구단체”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의원연구단체”를 “연구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내역서”를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를 “심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구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의원이 의정발전 ----- ----- -- 의원연구단체----- ----- ----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 ----- -----.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 이상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초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 연구단체의 --

<p><u>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u> <u>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u> <u>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u> <u>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u></p> <p>제5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p> <p>② <u>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u>의원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u></p> <p>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u></p>	<p>-----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 -----.</p> <p>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p> <p>제5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p> <p>③ ----- 연구단체 -----.</p> <p>④ ----- 개의하고, 출석위원 -----.</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 -- 각 호-----.</p> <p>1. <u>연구단체</u>-----</p>
--	--

<p>2. (생 략)</p> <p>3. 연구활동비 책정 및 <u>배분</u>에 관한 사항</p> <p>4. <u>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u>에 관 한 사항</p> <p>5. <u>기타</u> 필요한 사항</p> <p><u><신 설></u></p>	<p>2. (현행과 같음)</p> <p>3. ----- <u>지원</u>-----</p> <p>4. <u>연구활동 결과보고서</u>-----</p> <p>5. 그 밖에 <u>연구단체 운영</u>에 -- 제6조의2(연구단체 지원 등) ①</p> <p><u>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 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 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 지하여야 한다.</u></p> <p>③ <u>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 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 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 할 수 없다.</u></p> <p>④ <u>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 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 동비를 회수해야 한다.</u></p>
---	--

제7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 또는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한 계획서 또는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9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

제7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가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
-----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1. · 2. (현행과 같음)

제9조(공동참여) 연구단체-----

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u>의원연구단체</u> 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감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u>사용내역서</u> 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u>심사를</u>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u>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u> --.
④ (생략)	----- ----- <u>심의</u> --.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서자 서명부**

발의자		찬성자	
의원 성명	서명 날인	의원 성명	서명 날인